

1. 개정이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휘발성유기화합물, 자동차연료 등 현행 대기 관리 제도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기술인의 자가측정 관련 준수사항 명확화(안 제54조)

환경기술인이 자가측정(대행)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도록 명확히 규정

나.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관리 제도 정비(안 제120조의2, 제120조의3, 제120조의4)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절차, 제조업체의 변경신고에 관한 세부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로 규정 등

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제도 정비(안 별표 3, 부칙<환경부령 제992호> 안 제4조, 제5조)

1) 사업자가 부속유기질비료제조시설에 대해 악취저감계획을 제출하여 관할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신고(허가)·변경신고(허가) 기한 연장

2) 사업자가 가스열펌프(GHP)에 대해 저감시설 인증 지연 등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고(허가)·변경신고(허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 저감시설 설치계획(이행계획)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기관은 적정 개선기간을 부여하여 수리

3) 2022년 12월 31일 당시 기설치·설치 중인 GHP는 타 법령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제한 규정 적용 예외

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관리 제도 정비(안 별표 10의3, 별표 16의2)

1) 내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에 대한 부상지붕시설 보완조치 등 관리 기준이 신설('19.7)됨에 따라 조치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정기점검시 관리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2)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산정법 보완

마. 기타(안 제7조의2, 제121조, 제121조의2, 제122조)

1) 2024. 7. 23. 개정된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호의 시행규칙 위임 사항에 대한 규정 마련

2) 법률용어와 정합성을 위해 검사기관을 검사대행기관으로 정비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연료를 말한다.

1. 디메틸에테르(Dimethylether)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서 별도의 특별한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고도 자동차용 연료로 직접 사용이 가능한 에너지

제5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가측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정확히 할 것. 다만, 법 제39조에 따라 자가측정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할 것
4. 자가측정시 시료채취 및 측정 결과를 정확히 기록할 것. 다만, 제39조에 따라 자가측정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측정기록이 「환경분야 시

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
시험기준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할 것

제120조의2제1항제2호 중 “환경부장관”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1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받으려”를 “받으려는 자 및 법 제
74조제4항에 따라 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를 다시 받으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0조의4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그 밖에 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변경신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환
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1조의 제목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의 지정기
준)”을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으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검사기관”을 “검사대행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기관과 첨가제 검사기관”을 “검사대행기관과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으로 한다.

제121조의2의 제목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기관의 구분)”을 “(자
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의 구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
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검사기관”을 각각 “검사대행기관”

으로 한다.

제122조의 제목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를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신청 및 관리)”로 한다.

별표 3 제2호 라목에 4) 및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2)~3)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 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행계획 등을 제출하여 인정받은 경우, 2)~3)의 각 기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날까지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해야한다.

5) 사업자가 4)에 따라 이행계획 등을 제출하여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 기한을 연장받았으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별표 10의3 제2호 나목에 1) 다) (1) (라) 및 3) 나) (1) (라)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목1) 다) (1) (라) 부상지붕 시설 보완조치 현황

나목3) 나) (1) (라) 부상지붕 시설 보완조치 현황

별표 16의2 제1호 나목 중 “함량은 제조사가 제공하는 도장사양서 또는 제품설명서 등에 적힌 최대희석비(제조사가 제공하는 도장사양서 등

에 별도의 회석비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용도분류별 최대회석비를 말한다)로 회석한 후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계산방법에 따라 제조사가”를 “함유량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여”로 하고, 같은 목에 1),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조사가 제공하는 도장사양서 또는 제품설명서 등에 적힌 최대회석비를 적용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함유량을 산정한다.

2) 제조사가 제공하는 도장사양서 등에 별도의 회석비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거나 도장사양서에 적히지 아니한 회석제 등을 사용하여 제조하는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용도분류별 최대회석비 및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함유량을 산정한다.

부령 제992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부칙에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가스열펌프 설치허가 등에 관한 개선계획의 제출) ① 가스열펌프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가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고자 할 때 부득이한 사정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첨부할 수 있으며,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개선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 이내의 개선기간을 정하여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을 제출한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선기한 내에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22년 12월 31일 당시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 허가 등을 받아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가스열펌프로써 별표 3 제2호나목32)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설치제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보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2(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 영 제1조의2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연료를 말한다.
				1. 디메틸에테르(Dimethylether)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서 별도의 특별한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고도 자동차용 연료로 직접 사용이 가능한 에너지
제54조(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4조(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 ① ----- ----- -----.
1.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3. 자가측정은 정확히 할 것(법 제39조에 따라 자가측정을 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자가측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정확

4. <u>자가측정한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할 것(법 제39조에 따라 자가측정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u> 5. · 6. (생략) ② (생략) 제120조의2(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등)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가 제조기준에 맞는지에 관한 검사의 방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그 제조기준 중 대기오염물질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기오염에 영향을 주는 항목의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u>히 할 것. 다만, 법 제39조에 따라 자가측정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할 것</u> 4. <u>자가측정시 시료채취 및 측정 결과를 정확히 기록할 것. 다만, 법 제39조에 따라 자가측정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측정기록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할 것</u> 5.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20조의2(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등) ① ----- ----- ----- ----- ----- ----- ----- ----- -----.
---	--

1. (생 략)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시험방법

② (생 략)

제120조의3(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절차) ①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연
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3호
서식의 자동차연료·첨가제 또
는 촉매제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시료 및 서류를 첨부하
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③ (생 략)

<신 설>

제120조의4(첨가제·촉매제 제조
업체의 변경신고) ① ~ ③ (생
략)

<신 설>

1. (현행과 같음)

2. ----- 국립환경과학원장-----

② (현행과 같음)

제120조의3(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절차) ① --

-- 받으려는 자 및 법 제74조제
4항에 따라 첨가제 또는 촉매제
의 검사를 다시 받으려-----

-----.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자동
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
시한다.

제120조의4(첨가제·촉매제 제조
업체의 변경신고) ① ~ ③ (현
행과 같음)

④ 그 밖에 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121조(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①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는 별표 34의2와 같다.

② 자동차연료 검사기관과 첨가제 검사기관을 함께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능력과 검사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1조의2(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기관의 구분) ①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연료 검사기관은 검사대상 연료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휘발유·경유 검사기관
2. 엘피지(LPG) 검사기관
3. 바이오디젤(BD100) 검사기관

의 변경신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1조(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① -----

--- 검사대행기관-----

--.

② ----- 검사대행기관과 첨가제 검사대행기관-----

-----.

제121조의2(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대행기관의 구분) ① --

-- 검사대행기관-----

---.

1. ----- 검사대행기관
2. ----- 검사대행기관
3. ----- 검사대행기관

4. 천연가스(CNG)·바이오가스 <u>검사기관</u> ②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른 첨가제 <u>검사기관</u>은 검사대상 첨 가제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구분한다. 1. 휘발유용·경유용 첨가제 <u>검 사기관</u> 2. 엘피지(LPG)용 첨가제 <u>검사 기관</u> 제122조(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①·② (생략) 부령 제992호 대기환경보전법 시 행규칙 부칙 <u><신설></u>	4. ----- <u>검사대행기관</u> ② ----- ----- <u>검사대행기관</u> ----- ----- -----. 1. ----- <u>검 사대행기관</u> 2. ----- <u>검사 대행기관</u> 제122조(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신청 및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부령 제992호 대기환경보전법 시 행규칙 부칙 제4조(가스열펌프 설치허가 등에 관한 개선계획의 제출) ① 가스 열펌프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가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 설의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고자 할 때 부득이한 사정으로 배출허용기 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선 계획을 첨부할 수 있으며, 유역
--	--

<신 설>

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개선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 이내의 개선기간을 정하여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선계획을 제출한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선기한 내에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22년 12월 31일 당시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 허가 등을 받아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가스열펌프로써 별표 3 제2호나목32)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설치제한 규

별표 3 제2호 라목 1) ~ 3) (생략)

<신 설>

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보지 아니한다.

별표 3 제2호 라목 1) ~ 3) (현행과 같음)

4) 2)~3)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행계획 등을 제출하여 인정받은 경우, 2)~3)의 각 기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날까지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해야한다.

5) 사업자가 4)에 따라 이행계획 등을 제출하여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 기한을 연장받았으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1년

별표 10의3 제1호 (생 략)

제2호 정기점검의 내용 및 방법

구분	내용 및 방법
가. 공통 기준 준수 여부 조사	(생 략)
나. 업종별 시설관 리기준 준수 여부 조사	1) I 업종 가)·나) (생 략) 다) 저장시설 (1) 내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 시 설관리기준 준수 현황 (가)~(다) (생 략) <신 설> (2)·(3) (생 략) 라)~바) (생 략) 2) (생 략) 3) III 업종 가) (생 략) 나) 저장시설 (1) 내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 시 설관리기준 준수 현황 (가)~(다) (생 략) <신 설> (2)·(3) (생 략) 다)~바) (생 략) 4) (생 략)

별표 16의2 제1호 가. (생 략)

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량은
제조사가 제공하는 도장사양서
또는 제품설명서 등에 적힌 최

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별표 10의3 제1호 (현행과 같음)

제2호 정기점검의 내용 및 방법

구분	내용 및 방법
가. 공통 기준 준수 여부 조사	(생 략)
나. 업종별 시설관 리기준 준수 여부 조사	1) I 업종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저장시설 (1) 내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 시 설관리기준 준수 현황 (가)~(다) (현행과 같음) (라) 부상지붕 시설 보완조치 현황 (2)·(3) (현행과 같음) 라)~바) (현행과 같음) 2) (생 략) 3) III 업종 가) (현행과 같음) 나) 저장시설 (1) 내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 시 설관리기준 준수 현황 (가)~(다) (현행과 같음) (라) 부상지붕 시설 보완조치 현황 (2)·(3) (현행과 같음) 다)~바)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별표 16의2 제1호 가. (현행과 같음)

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
하여 도료의 포장용기에 표시한

대회석비(제조사가 제공하는 도
장사양서 등에 별도의 회석비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용도분류별 최
대회석비를 말한다)로 회석한
후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
는 계산방법에 따라 제조사가
도료의 포장용기에 표시한 값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다. (생 략)

제2호 (생 략)

값을 말한다.

1) 제조사가 제공하는 도장사양
서 또는 제품설명서 등에 적힌
최대회석비를 적용하여 국립환
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산정방
법에 따라 함유량을 산정한다.

2) 제조사가 제공하는 도장사양
서 등에 별도의 회석비가 구체
적으로 적혀 있지 않거나 도장
사양서에 적히지 아니한 회석제
등을 사용하여 제조하는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용도분류별 최대회석비 및 산정
방법을 적용하여 함유량을 산정
한다.

다. (현행과 같음)

제2호 (현행과 같음)